13.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출일자 : 2022년 4월 1일
- 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도시재창조국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- O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90회 임시회
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년 4월 14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)

□ 제안이유

○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(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-1162호, '21.12.23.,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)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,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O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 변경(안 제2조)
 - "건설업자" 를 "건설사업자" 로 용어 순화
-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 변경(안 제4조)
 - "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" 문구 삭제
- 활성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11조)
 -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등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부터 제5조 까지, 제5조의3조, 제6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김건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(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-1162호) 및 「건설산업 기본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 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임.
- 안 제2조에서 "건설업자"를 "건설사업자"로 변경한 것은 「건설산업 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당초 "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, 양질의 설계·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"에서 "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" 문구를 삭제하였는데.
-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, 이는 자율규제 형성을 통한 품질과 가격을 둘러싼 정당한 경쟁 위축, 지역업체 간 담합 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,
- 불필요한 과당경쟁은 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 경쟁의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인 만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・제도적 보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1조제4항에서 "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" 구성 시특정 성(性)의 비율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 것으로, 이는 위원회성(性)비의 균형을 맞추고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됨.
- 그 외 안 제2조에서 안 제17조,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에서는 법제처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	질	의	답 변
0	안 제4조제2항에서 요한 과당경쟁 자 하였는데, 과당경쟁 공 등의 문제점이 을 볼 때 부작용은	제"문구를 삭제 때문에 부실시 발생한다는 점	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지만, 조례 개정과 별도로 실질 적이고 면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해 나가겠음.

5. 토론요지

O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O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O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음